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증 자백 시 감면 폐지〉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49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춘생 · 서왕진 · 황운하 · 김준형 · 이해민 · 신장식
차규근 · 강경숙 · 김선민 · 백선희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1. 8.

3. 회 부 일 : 2025. 1. 9.

※ 의안번호 : 734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전심의 등을 위한 증인·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와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 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u>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전심 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 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 ----- ----- ----- ----- . <단서 삭제> <삭 제>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 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5조(고발) ① ----- ----- ---- 제14조----- ----- . ----- ----- ----- .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14조¹⁾는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 등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그 자백은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5조²⁾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등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증인 등의 위증 등에 대한 자백 시 형의 감면 규정 및 고발 예외 규정은 1975년 국회증언감정법 제정 이래로³⁾ 유지되어 온

1)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일부 표현의 수정은 있었지만, 그 내용은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

제정 국회증언감정법(1975. 11. 29. 제정·시행) 제8조(위증·허위감정의 벌,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당해 안전의 심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이며,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고발) ①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자

것으로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종료 전 위증 등에 대한 자백을 권장하여 증언·감정 내용의 허위를 배제하고 진실을 확보⁴⁾함으로써 위증으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개정안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와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증인의 진술과 감정인의 감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해서는 증인 등의 위증 등에 대한 자백 시 형의 감면 규정 및 고발 예외 규정이 국회증언감정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연혁적 의의,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증인의 진술과 감정인의 감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자백이 있더라도 그 고발 여부는 재량사항으로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부개정 국회증언감정법(1988. 8. 5. 전부개정·시행)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①국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4) 국회운영위원회, 「의회대사전」, 1992, p.1222

5) 참고로, 제14대국회 노동위원회(1994. 2. 7.)에서 위증을 자백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발하였는데, 해당 증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